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·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)
 나. 표준투자권유준칙 (초저위험상품의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·평가 합리화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4/10 개정·2026/5/22 시행)**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·ETN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·ETN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투자 전 심화 사전교육 도입 및 기본예탁금 제도 적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
 - 금융위 '국내-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(2026.1.30.)' 발표

2) 주요 내용

-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 관련 명칭 사용 제한(제4-11조)
 -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'단일종목'을 포함하도록 의무화
 - 판매·광고 등에 있어서 'ETF' 등 명칭 사용 금지
 - 펀드, Fund, ETF, Exchange Traded Fund 등의 명칭 사용 금지
-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·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(제4-12조)
 -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·ETN 거래시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부과
 - 기존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·ETN 투자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·ETN에 투자하는 경우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면제(부칙 제2조)
-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·ETN 기본예탁금 도입(제4-13조)
 -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·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·ETN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적용
 -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현금 범위에 외화도 포함 가능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**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·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각 국가별 매매일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

-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·ETN의 기본예탁금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며, 거래계좌 최초 설정시 1,000만원 이상 적용

나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26/4/9 개정 · 2026/4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감원의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운영 결과(2025.12.22)의 '초저위험 상품의 투자금 성향 평가 합리화' 조치를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초저위험(6등급) 상품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 · 평가 합리화(회사참고사항 8-1, 참고 1)
 - 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(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으로 위험등급 6등급)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단계의 '현재 투자자금성향 평가' 생략 허용
 - 위험태도, 재산상황, 투자성상품 취득·처분 경험 등 일반적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